

대출거래 추가약정서 (주택담보대출용)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앞

채무자 본인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와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금액의 (%) 범위 이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대출 실행의 종단

- 본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충당할 경우, 채무자가 대출 실행일의 전일까지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실행 확정 버튼을 누르면 대출 실행일 오전 자동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실행 확정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을 주택 구입자금에 충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대출 실행일에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실행 버튼을 누른 시점에 곧바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실행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 의무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 제 4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은행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채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본 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담보 제공한 주택에 관하여 은행의 담보권 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말소하거나 상실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 대출이 타 금융기관의 기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수령한 후 즉시 상환하기로 한 기준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그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전호에 따라 상환 한 기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을 지체없이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본 대출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임차보증금(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수령한 후 즉시 임차인(전세권자)에게 임차보증금(또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해당 임차인(전세권자)이 속한 세대가 전출하거나 임차권(전세권)을 말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4 조 담보가치의 유지

-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하 '담보주택')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및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침해나 제한이 없도록 합니다.
- 채무자는 은행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담보주택을 처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용익권 또는 담보권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 채무자는 은행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임대차(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담보주택에 본인 세대¹⁾ 이외의 다른 세대²⁾가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1) "본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이거나 채무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직계혈족인 세대를 말합니다.
2) "다른 세대"에는 채무자 세대가 아닌 세대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동거인('민법' 제 779 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제 5 조 채무의 승계 및 인수 금지

담보부동산의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승계 또는 인수는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성명 주소	(인)	년 월 일
--------------	-----	-------------

2025.01.08. 시행

※ 이 약정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카카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거래 추가약정서(주택담보대출용)」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비고
<u><신설></u>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조 담보가치의 유지</p> <p>① 채무자는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하 '담보주택')에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및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침해나 제한이 없도록 합니다.</p> <p>② 채무자는 은행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담보주택을 처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포함)하거나 용익권 또는 담보권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③ 채무자는 은행이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임대차(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담보주택에 본인 세대¹⁾ 이외의 다른 세대²⁾가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p> <p>1) "본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이거나 채무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직계혈족인 세대를 말합니다.</p> <p>2) "다른 세대"에는 채무자 세대가 아닌 세대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동거인(「민법」 제 779 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p>	
제 4 조 채무의 승계 및 인수 금지 (생략)	제 5 조 채무의 승계 및 인수 금지 (현행과 같음)	조항 체하